

연 대 보 증 서

수신: 주식회사 우리핀테크대부

주식회사 우리핀테크대부(이하 “대주”)는 성 [] 종합건설 주식회사(이하 “채무자”)와 체결한 2018년 10월 31일자 대출약정(이하 그 수정·변경계약을 포함하여 “대출약정(서)”)에 따라 합계 금 삼십억원(₩3,000,000,000)을 한도로 채무자에게 대출하기로 하였다.

법인연대보증인으로서 [] 중앙건설 주식회사, 개인연대보증인으로서 정종 [] (이하 법인연대보증인과 개인연대보증인을 총칭하여 “연대보증인”)는 대출약정과 관련하여, 채무자의 대주에 대한 피보증채무(아래에서 정의함)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.

이에 연대보증인은 2018년 10월 31일 대주에게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.

제 1 조 정 의

본 연대보증서에서 사용된 용어는,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, 대출약정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“피보증채무”라 함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를 포함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말한다.

제 2 조 진 술 과 보 장

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.

1.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.



2.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데 필요한 행위능력 기타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
3.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대출약정과 관련된 채무변제능력과 재정상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확인하였고, 그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.

제 3 조 연대보증사항

- (1)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피보증채무를 금 삼십구 억원(₩3,900,000,000)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.
- (2) 연대보증인이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, 보증 등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, 그 담보제공, 보증 등은 본 연대보증을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, 따로 한 담보제공, 보증 등에 관하여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추가하여 본 연대보증을 의한 피보증채무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.
- (3) 연대보증인은,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추가되는 경우, 연대보증인과 추가되는 연대보증인 간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, 각 연대보증인은 각자 독립하여 피보증채무 전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.
- (4) 연대보증인은 대주가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,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양도 전 대주에게 부담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. 그러나, 연대보증인은 대주의 동의 없이는 이 연대보증채무를 양도하지 못한다.
- (5) 연대보증채무는 피보증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에 소멸한다.
- (6)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피담보채무가 채무자의 내부 절차 불이행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대주에 대하여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



연대보증인은 본 연대보증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연대보증서의 각 조항에 따른 제반 보증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법인연대보증인

중양건설 주식회사(법인등록번호: 110111)

서울 강북구 삼양로

대표이사 박 미 (인)
중양건설주식회사

서울시 강북구 삼양로
대표이사 박 미



개인연대보증인

정종 [7] [] D



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[]

정종 []

